

임기구분	임기 내	사업주체	김천시
신규여부	신규사업	중앙정부 지원	제도적 지원 필요
예산구분	예산	사업이행도(진도율)	0%
주관부서	세정과	협업부서	전부서
공약실명제	과장 이현기(6120), 팀장 정용현(6030), 담당자 이진영(6682)		

□ 현황 및 정책 목표

- 「고향사랑기부금법」 제정(2021.10.19.), 시행일 2023. 1. 1.
- 시행령 제정(2022. 8월 예정) - 법제처 심사 중
-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차질없는 제도 시행으로 성공적 정착 추진

□ 사업개요

- 기부주체 · 한도액
 - 기부자: 개인 (법인 불가능)
 - 기부처: 지방자치단체
 - 주민등록상 거주지(기초+광역)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
 - 기부액 한도: 연간 500만원 (지방자치단체 합산)
- 세액공제 혜택 제공

기부액	세액공제 비율
10만원 이하	100%
10만원 초과 ~ 500만원	10만원 + 16.5%(10만원 제외 금액의)

- 답례품: 기부촉진,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지역생산 답례품 제공
 - 기부액의 30% 한도,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□ 추진일정

세부 추진사항	2022				2023				2024				2025				2026				2027 이후			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
조례제정																								
고향사랑기금 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
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																								
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																								
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																								
종합정보시스템 구축																								
고향사랑 기부제 시행																								
답례품 추가 선정 및 아이디어 발굴																								
고향사랑기금 관리·운용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단위	목표	2022	2023	2024	2025	2026
조례제정	회	1	1				
기본 계획 수립	회	1	1				
기금 운용 계획 수립	회	5	1	1	1	1	1
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	회	5	1	1	1	1	1
기금의 결산	회	3			1	1	1

□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

○ 전담 인력 확보 시급: T/F팀 설치 및 직원 배치

- 시행령 제정(8월 예정) 이후 법 시행일 전까지 사전 준비 시일이 촉박

- 조례 제정, 기금설치,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
-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, 답례품 선정
- 공급업체 공모, 정보시스템 등록

- 자치단체별 답례품 경쟁 과열 및 지역 간 격차 발생
 - 답례품으로 기부자의 기부처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
 - 기부자 발굴을 위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구성 방안 지속 연구
-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강구
 -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
 - 종합정보시스템 운영·관리 주체, 답례품 관련 사후관리 문제

□ 기대효과

-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인구 감소 극복 및 주민복지 증진
 -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감독 하에 사회적 취약계층, 지역 주민의 문화,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합목적성 있는 기금 사업 추진
- 지역특산물 답례품 제공으로 소득증대, 지역관련 산업발전 및 고용증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
 -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우수 농특산품 홍보 효과
 - 지역 특화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고안하여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
-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애향심 고취